

[별표 1]

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(제6조 제2항 관련)

○ 소방청 본청

심사대상	위 원 장	위 원(4~6명)
국장급 이상	차장	감사·인사·국제협력 담당 부서장, 그 외 부서 국장급 또는 과장급
과장급 이하	기획재정담당관	감사·인사·국제협력 담당 부서장, 그 외 부서 과장급

※ 단,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을 2명 이상 포함한다.

○ 소속기관

심사대상	위 원 장	위 원(4~6명)
과장급 이상 (소방정·4급 이상)	소속기관장	감사·인사·국제협력 담당 부서장, 그 외 부서 과장급
계장급 이하 (소방령·5급 이하)	과장급	감사·인사·국제협력 담당 부서장, 그 외 부서 과장급 또는 계장급

※ 단, 소속기관장이 대상인 경우에는 본청 국장급 이상 대상 절차를 준용한다.